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미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076

발의연월일: 2024. 8. 22.

발 의 자:임미애·주철현·박민규

임오경 · 송옥주 · 김용만

박은정 · 임호선 · 김용민

황정아 • 이병진 • 문금주

윤준병 • 문대림 • 서삼석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하거나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세율을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인하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할 당관세 제도를 두고 있음.

그러나 관세율 인하를 적용받은 수입 농산물로 인하여 국내 농산물에 피해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한편, 현행법에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할당관세 품목의 수입과 관련하여 실적 및 결과를 조사·분석한 보고서를 할당관세 부과 다음해에 해당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, 할당관세 품목의 수입 증가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산물 등 품목의 경우해당 품목을 관장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

서도 별도로 보고받을 필요성이 제기됨.

이에 수입 촉진을 위한 할당관세를 부과할 때 국내사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, 할당관세 부과 대상 물품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할당관세 부과 실적 및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71조).
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"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세"를 "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세(이하 이조에서 "할당관세"라 한다)"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"기획재정부장관"을 "할당관세 부과 대상 물품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"으로, "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세"를 "할당관세"로, "효과 등"을 "효과 및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"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(이하 이 조에서 "국내산업"이라 한다)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과를 중지하거나 세율을 조정하는 등 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⑥ 제5항에 따른 할당관세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할당관세의 부과 결과에 관한 검토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거나

정부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한 관계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 또는 의뢰를 받은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연구기 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
제71조(할당관세) ① (생 략)	제71조(할당관세) ① (현행과 같	
	<u></u> 수	
<u><신 설></u>	② 제1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	
	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수입증	
	가로 인하여 동종물품 또는 직	
	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	
	을 생산하는 국내산업(이하 이	
	조에서 "국내산업"이라 한다)이	
	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	
	려가 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	
	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	
	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	
	우에는 부과를 중지하거나 세	
	율을 조정하는 등 그 대책을	
	<u>마련하여야 한다.</u>	
② (생 략)	<u>③</u> (현행 제2항과 같음)	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세	④ <u>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</u>	
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,	세(이하 이 조에서 "할당관세"	
수량, 세율, 적용기간 등은 대	라 한다)	
통령령으로 정한다.		
④ <u>기획재정부장관</u> 은 매 회계	⑤ 할당관세 부과 대상 물품과	
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<u>제</u>	<u>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</u>	

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그 결과(관세 부과의 <u>효과</u> 등을 조사·분석한 보고서를 포함한다)를 국회 소관 상임위 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<u>할</u>	<u>당관세</u>	
효과 및	! 국내산업에	미치는 영
<u>향 등</u> -		

⑥ 제5항에 따른 할당관세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할당관세의 부과 결과에 관한 검토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거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한 관계 연구기관에의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 이경우 요청 또는 의뢰를 받은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연구기관의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